제한경쟁 입찰 사유서

☐ 건　　명 : 신설 PSD 관리소 공기구비품(침대) 구매

☐ 관련근거 : 계약규정 제21조 1항 8호

○ 우리공사 회계규정 제116조(계약법령 및 다른 법령의 준용 등) 1항

○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(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) 1항 8호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·공고한 물품을 제조·구매하는 경우에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

○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(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) 및 동법 제9조(직접생산의 확인 등)

☐ 참가자격

○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[가구(침대/물품분류번호 5610151501)]를 소지한 업체

☐ 제한사유

○ 신설 PSD 관리소 물품(침대) 구매건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9조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을 시행하고자 합니다.

2017. 09. 07.

작성자 : 승강장안전문관리단　과장　곽태형 (서명)

확인자 : 승강장안전문관리단　단장　김종호 (서명)